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38
----------	------

2016. 9. 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6. 8. 12.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2016. 8. 16. 회부)

2. 제안이유

- 한옥보전 및 진흥의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공공한옥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 극대화를 위하여,
- 지역사회와 시민(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등 대시민 대상 서비스 부분만, 유사시설 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나 법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한옥 3개소」 일부 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지원

나. 위탁개요

- 대상한옥 :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 위탁기간 : 3년(2017~2019)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소요예산(안) : 연 612백만원

다. 주요 위탁내용

- 북촌문화센터: 북촌체험·관광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북촌체험, 탐방을 위한 방문객 대상 안내교육 개발
 - 북촌문화센터 강좌 및 체험행사 전문화
 - 방문객 대상 '관광에티켓'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대시민 서비스 응대를 위한 사무국 운영 등
- 한옥지원센터: 한옥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옥지원센터 기능과 연계한 한옥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 한옥건축교실, 소목교실, 한옥 체험전시, 한옥캠프 등 기획 운영
- 마을서재: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마을서재 도서 DB 구축 및 활용시스템 마련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현장 주민공동체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등

라. 추진근거

- 서울 공공한옥 운영관리 개선계획 방침(16.3.10)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 공공한옥 민간관리위탁 기본계획 방침(16.6.23)

마. 필요성

- 행정주도 운영으로는 지역사회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운영 한계
- 마을문화, 공동체, 지역가치를 위한 종합적, 전문적 활용을 통해 서울 공공한옥의 공공성 및 지역기여 확대 필요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위탁 통해 공공한옥의 경쟁력 및 지속성 확보
- 서울공공한옥 3개소에 대한 고유사무 및 시설관리는 시에서 지속 유지 하되, 각 한옥별 성격에 맞는 시민(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 부분만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한옥의 서비스 질 향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서울 공공한옥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한옥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6. 한옥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서울 공공한옥 3개소(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의 사무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하여 2016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서울 공공한옥’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한옥으로서, 현재 서울시에 총 34개소(북촌 32개소, 서촌 2개소)가 있고 이 중 27개소는 서울시가 나머지 7개소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시는 5개소의 공공한옥을 직영하고 있음.

1) “서울 공공한옥”이란 규칙에서 정하는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여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된 것을 말한다.

<서울 공공한옥 현황>

구 분	계	전통공방	한옥체험관	문화·복지시설	준비·공사중	기타
계	34	15	2	9	2	6
서울시	27	11	2	7	1	6
SH공사	7	4	-	2	1	-

○ 이 동의안에서 일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공공한옥은 “한옥지원센터”, “북촌문화센터”, “마을서재 및 쉼터갤러리” 등 3개소로서 종로구 계동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1천2백만원으로 집계됨(별첨 1 참조)

- 현재 북촌문화센터는 ‘북촌안내 및 홍보전시관 운영’, ‘기념품점 운영’, ‘전통문화강좌 운영’ 등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 한옥지원센터는 ‘한옥 119 긴급출동 및 상담’, ‘한옥 개·보수 및 지원제도 상담’, ‘한옥기술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고,
- 마을서재 및 쉼터갤러리는 ‘마을자료관’, ‘주민사랑방’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위탁대상 공공한옥 위치도>



<운영현황>

구 분	북촌문화센터 (‘02.10.22 개소)	한옥지원센터 (‘15.9.16 개소)	마을서재 & 쉼터갤러리 (‘15.10.22 개소)
위치	종로구 계동 105	종로구 계동 135-1	종로구 계동 135-2, 3
규모	대지 697㎡ 건물 237㎡	대지 405㎡, 건물 142㎡	대지 364.6㎡, 건물 33㎡
소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운영 시간	09:00~18:00(연중무휴) ※ 화·목 야간반 운영	09:00~18:00 (월~토)	09:00~18:00(연중무휴) ※ 화·목 야간강좌 운영
운영 인력	직원 1(본청 병행근무), 공공근로 2, 경비 2	직원 1(본청 병행근무), 공공근로 2, 경비 2	공공근로 2, 경비 2(한옥지원센터 병행)
역할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촌안내 및 지도 배포 등 홍보전시관 운영 - 강좌 및 절기행사 개최 - 주민회의, 전시, 행사 - 조용한관광 캠페인 운영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 기념품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국가한옥센터, 한옥장인 구성 운영 - 한옥 119상담 및 출동, 보수 지원, 한옥수요조사, 기술연구, 한옥 R&D 개발, 이력관리 등 - 한옥산업화, 한옥교실, 한옥명장인증제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료관 운영, 도서 열람, 강좌 운영 - 주민사랑방 운영,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 - 시설대관 및 각종 단체 지원 추진 - 한옥 관련 작은 전시 개최

- 그러나 각 공공한옥별 상주·운영인력이 부족하여 한옥조성과 담당 직원이 본청과 공공한옥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고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공공근로 인력도 투입되고 있으나 전문성 결여로 내실 있는 전통문화강좌 개최 및 체험행사운영, 대시민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구 분	고유사무(시 운영)	위탁사무(민간단체 운영)
북촌문화센터	<홍보전시관 운영 및 홍보 업무> - 북촌 홍보전시관 운영 - 홍보 업무(지도, 표지판 등) - 방송촬영, 언론 인터뷰 관리 <북촌상회 운영> - 운영자 선정 및 관리감독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전통문화강좌 및 체험행사 운영> - 전통문화강좌 운영 및 체험행사 전문화(토요체험행사, 절기행사 등) - 시민과 함께하는 북촌체험, 탐방 프로그램 <대시민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방문객 대상 침묵관광 교육, 안 - 마을해설사 운영 - 시민서비스 응대 등 사무국 운영
	시직원 1인(본청 근무 병행) + 공공근로 2명(비상근)	직원 3명(상근)
한옥지원센터	<주민 한옥살이 지원> - 한옥 119 긴급출동, 상담 - 지붕개보수 리모델링, 주기적 점검, 건축주 정보제공 등 <한옥정책 기술개발> - 한옥기술연구 및 정책 개발 - 국가한옥센터, 장인 협업 등 산업화방안 추진 등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대시민 서비스 응대>	<시민 교양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한옥건축교실 및 한옥소목교실 - 한옥캠프, 한옥인문학스케치교실 - 한옥가구(자재)체험전시 등
	시직원 1인(본청 근무 병행) + 공공근로 2명(비상근)	직원 1명(상근)
마을서재 & 쉼터 갤러리	<관리감독> - 갤러리 운영 프로그램 적합성 검토(전시콘텐츠 선정 등)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마을서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도서관리 및 DB 구축 - 작은도서관 운영모임, 동네강좌 등 주민대상 프로그램 개발 - 지역학교 연계 커리큘럼화 - 주민사랑방 예약제 운영 <쉼터 갤러리 전시운영> - 북촌·한옥 전시콘텐츠 발굴운영 <대시민 서비스 응대 등>
	공공근로 2명(비상근)	직원 1명(상근)

- 이에 따라,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고유사무는 한옥조성과에서 담당하되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시민 서비스 응대업무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인력난 해소,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겠다는 측면에서 본 위탁동의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이 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2)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요건상 쟁점사항은 없겠음.
- 다만, 민간위탁 후 배치되는 상근 인력은 5명에 불과하고, 서울시가 제시한 바와 같이 고유사무 및 위탁사무를 구분하여 부분 위탁할 경우 민간 위탁기관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위탁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운영실적 등을 모니터링하여 부분 위탁방식과 시설단위 위탁방식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한 후 부분 위탁방식의 적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음.
- 마지막으로, 위탁대상 공공한옥의 소유 및 임대상황을 살펴보면, “북촌문화센터” 및 “한옥지원센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한옥을 사용하고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한옥을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³⁾.

2) ④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예컨대 “북촌문화센터”는 2001년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하여 2002년부터 서울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최초 임대보증금(4억6천8백만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불합리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별첨]

'17년 사무 민간관리위탁 예산내역

(단위 : 원)

구분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쉼터 갤러리	총 계	비 고
합 계		334,949,705	134,965,759	142,015,640	611,931,104	
인건비	팀장	24,000,000	-	-	24,000,000	
	사무원	39,000,000	21,000,000	21,000,000	81,000,000	
	제수당	30,737,799	10,245,933	23,810,526	64,794,258	
	퇴직충당금 등	7,811,483	2,603,828	3,734,211	14,149,522	
소 계		101,549,282	33,849,761	48,544,737	183,943,780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560,000	360,000	-	2,920,000	
	보험료	9,127,973	2,083,544	4,388,449	15,599,966	
	소모품비	3,885,500	1,678,170	1,678,170	7,241,840	
	수선유지비	2,400,000	2,400,000	-	4,800,000	
	통신비	3,651,600	4,131,600	4,131,600	11,914,800	
	홍보비	10,462,000	5,462,000	5,462,000	21,386,000	
	기타	12,113,350	750,684	3,510,684	16,374,718	
소 계		44,200,423	16,865,998	19,170,903	80,237,324	
사업비	행사, 체험 등	189,200,000	84,250,000	74,300,000	347,750,000	
소 계		189,200,000	84,250,000	74,300,000	347,750,000	